

# 2024년도 제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3. 26.(화요일), 10:30
- 장 소: 대면 심의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성주(분과위원장), 김정숙, 안효질, 손수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3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박현주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안건 738건(안건번호 제2024-19369호~2010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19369호~19416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 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19417호~19419호는 ◇◇◇ 블로그에서 뮤지컬의 불법복제 영상 등 교환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19420호~19432호는 ◇◇◇ 블로그, 카페 및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안건번호 제2024-19433호~20106호 게시물 1,196건은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김성주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4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4-3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성주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B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정보 및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등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박현주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300건의 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19369호~1941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판매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건번호 제2024-19369호~19416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D 위원: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복제물등'으로서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4-19369호~1941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4-19417호~1941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 게시된 뮤지컬 무단촬영물 판매 또는 교환 게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뮤지컬 판매·교환 게시물은 보호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추세인가?
- 박현주 전문위원: 장기적으로 감소한 것인지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움.
- B 위원: 얼마 전 진행한 단속의 영향으로 조금 줄어든 것일 수도 있음.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4-19417호~19419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D 위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성주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19417호~1941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박현주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4-19420호~1943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 카페 및 웹하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P2P를 이용하는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파일의 일부분이며 그 부분이 다 모여서 하나로 완성이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침해에 해당하냐는 문의가 있었음.
- D 위원: 기술적으로 저작물 파일의 부분이 올라갈 수도 있고 트래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점은 이용자가 통제하기 어려움.
- A 위원: 그러면 웹하드 업체에 대해 방조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가?



입.

- 김성주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4-19433호~2010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심의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성주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제2024-19433호~20106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4-19369호~19416호(순번 1번~48번), 제2024-19417호~19419호(순번 49번~51번), 제2024-19420호~19432호(순번 52번~64번), 제2024-19433호~20106(순번 65번~738번)는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o 김성주 분과위원장이 제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4. 2.

분과위원장 김성주

위원 김정숙

위원 안효질

위원 손수호